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법률고문 지원에 관한 규정

(2020.12.11.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고문) ①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은 공무원 노조의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법률 고문을 둔다.

②제1항의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위촉한다.

제3조(직무)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노조 또는 위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공무원의 직무 수행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3.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공무원노조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및 자문

제4조(위촉) ① 위원장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및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할 때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공무원노조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법률고문이 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 해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어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의 법률고문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

부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무원노조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공무원노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법률고문이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7.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8. 그 밖에 위촉 해제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원장은 법률고문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 조사, 검증, 감정 등을 거쳐 문서로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등 지원) ① 위원장은 조합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법률고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소송비용은 최대 100만원, 벌금은 최대50만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은 노동조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④ 이 경우 조합원이 군청 등을 통해 전체 변호사 비용등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시 초과금액은 환수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조합원이 직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